

植民地下 朝鮮人 大地主의 研究

—1920年代를 中心으로

安 秉 直*

.....<目 次>.....

- I. 머리말
- II. 大地主의 實態
- III. 大地主의 土地管理와 畝音
- IV. 農業에 있어서 大地主의 役割
- V. 맺음말

.....

I. 머 리 말

일제 식민지하 朝鮮人 地主의 사회적 존재형태와 역할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는 현재의 成人들간에 잘 알려지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皮相的인 생각은 그들의 구체적인 존재형태와 역할이 어떠한이었으며, 더욱이 그들의 일반적인 존재형태와 역할이 어떠한이었는 가리는 물음에 대하여 거의 무척하디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대체로 개별적인 경험에서 얻어졌던지, 그렇지 않으면 民間의 傳 소문에 대한 기억에 불과 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조사한 비에 의하면 일제 식민지하 조선인 지주에 관한 구체적 연구는 단 한 편 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주에 대한 부분적 연구와 지주의 성격에 대한 연구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지만 이들은 뒷날같이 지주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결하고 있다. 그리고 필자는 아직도 일제 식민지하 조선인 지주에 관한 종합적 조사지료를 단 하나도 발견하 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지주에 관한 자료는 지나히 피상적이거나 단편적인 것이 이니면 개별적인 것 뿐이었다. 그러므로 지주에 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지주의 존재형태와 활동에 대한 現象분석이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논문은 이 목적을 위하여 쓰여진 것이다.

지주의 사회적 존재형태와 활동에 관한 구체적이며 종합적 연구를 위해서는 지주의 시대 적 交隣과정, 사회적 신분, 토지획득의 시금원천과 방법, 농업경영, 농업외의 경제활동 및 정치활동등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社會科學大學 經濟學科 助教授

는 시간 및 자료의 제약 때문에 앞에 든 지주의 사회적 존재형태와 환동에 대한 여러 측면을 모두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었다. 여기서의 분석대상은 일제 식민지하 조선인 大地主의 存在實態, 創業시기, 土地管理 및 壽命과 이들에 부수된 약간의 문제들이다.

일제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20정보 혹은 30정보 이상의 토지소유자를 대지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지주나 중소지주나하는 문제는 단순히 토지소유면적의 크기에 단렸을 뿐이다. 면적 대·중소지주의 구분이 단순히 토지소유면적의 크기에만 달려 있다면, 그 구분의 과학적인 의미는 전혀 없을 것이다. 그것이 의미있는 구분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면적의 크기에 따라 지주의 사회경제적 行動과 그의 사회적 성격이 달라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대지주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정의할까 한다. 첫째 대지주는 대토지소유자이기 때문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토지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사농등의 管理人을 두어 토지를 관리하는 지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간관리인의 존재이며, 지주의 존재형태가 법인으로서의 회사형태인가 혹은 개인형태인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 형태야 어떻건 그의 사회적 행동과 성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둘째 대지주는 직접적인 생산의 담당자가 아니며 단순한 小作料의 수취인이다. 여기서는 지주가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투자를 행하는가 또는 한 톨이라도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얼마나 영리욕을 탐내고 있는가 등을 문제삼지 않는다. 비록 그가 비농업부문에 있어 근대적 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농업에 있어서는 생산의 주체가 아닌 것이다.

위와 같이 대지주를 정의한다면 대지주와 중소지주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대지주나 중소지주나 다같이 생산의 직접적인 주체는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들이 단순한 소작료의 수취인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은 동일하지만 대지주는 토지관리를 위한 관리인을 두나 중소지주는 그것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관리인의 존재가 양자의 사회적 성격을 얼마나 다르게 하는가는 여기서 직접 문제삼지 않기로 한다. 그 성격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깊은 分析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II. 大地主의 實態

일제 식민지하 조선인 대지주의 수가 인도별로 어떻게 변천하여 왔는가 하는 구체적인 수치를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우리가 대지주의 연도별 변동상황을 추측할 수 있는 자료는 地稅納付者統計인데, 이 자료는 현실적 지주의 존재실태와 아주 거리가 멀다. 대지주의 수를 밝힐 수 있는 단편적인 자료들은 여기 저기서 散見되나 그들간에도 너무 큰 차이가 있다. 이 수치의 차이는 조사基準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만

은 아니었다. 조사의 精粹에 보다 큰 원인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된다.⁽¹⁾

이해 불완전하나나 단편적인 대지주에 관한 통계를 이용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보기로 한다.

1934년(?) 30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조선인 대지주수는 4,024인이었다. 이들을 다시 100정보를 기준으로 나누어보면 100정보 이상의 지주가 19.1%, 미만이 80.9%로서 100

<표 1> 土地所有規模別 地主의 分布 <1934?>

규 모 별	지 주 수
	町 人
30~50	1,921 (46.2)
50~100	1,439 (34.7)
100~500	760 (18.3)
500~1,000	32 (0.8)
합 계	4,152(100.0)
(實數)	(4,024)

資料：朝鮮農會報 第8卷 第7號, 1934.

註：합계의 實數와의 차이는 합계가 도별집계이기 때문이다.

경보 미만의 대지주가 압도적인 다수이며, 100정보 이상의 토지소유자는 800인도 채 되지 못하였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논 225,183정보, 밭 115,787정보로서 합계 340,970정보이며 전국 소작지의 13.2%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이 건 조선인 지주의 소유토지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조선내 30정보 이상 지주의 토지소유면적이 전국 소작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1.6%이다. 그러므로 조선인 대지주가 소유하는 토지는 전조선인 지주가 소유하는 토지면적의 20%전후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대지주의 도별 분포상황은 <표 2>와 같다. 이 표의 통계에는 조선인 대지주만이 아니고

<표 2> 道別 所有規模別 地主分布(1913)

단위·人

	京畿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黃海	平南	平北	江原	咸南	咸北	합계
町														
100이상	132	1	24	72	31	31	34	17	30	10	3	5	3	393
50이상	329	19	118	119	122	108	85	225	220	109	7	39	6	1,506
20이상	914	102	336	407	215	377	235	723	692	809	80	239	54	5,143
합계	1,375	122	478	598	368	476	354	965	942	928	90	283	63	17,042
	(19.5)	(1.7)	(6.8)	(8.5)	(5.2)	(6.8)	(5.0)	(13.7)	(13.4)	(13.2)	(1.3)	(4.0)	(4.9)	(100.0)

資料：朝鮮農會, 『朝鮮農業發達史』(發達篇) 1944, p. 64

(1) 朝鮮農會, 『朝鮮農業發達史』(發達篇) 1944, p. 65.

일본인 대지주를 포함하고 있으며 <표 1>과 통계가 아주 다르지만 도별 대지주의 분포상황을 보이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20정보 이상 대지주의 비중은 경기도가 으뜸으로서 전체의 19.5%를 차지하고 있으며 황해, 평남, 평북, 전북, 경북, 충남등의 순으로 되어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주제도는 경기를 포함하는 三南지방에 가장 잘 발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왔지만 황해, 평남, 평북도 이미 함방당시에 지주제도가 삼남지방에 못지 않게 발달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지방에서는 100정보 이상의 거대지주는 삼남지방에 비하여 훨씬 적은 편이다. 100정보 이상 거대지주의 분포상황을 보면 역시 경기도가 으뜸으로서 132명이며 전북, 경남, 전남, 경북, 평남등의 순으로 되어있다. 위의 표는 반드시 지방별 지주제도의 발전사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어느 지방의 지주제도의 발전사정을 알기 위해서는 不在地主의 상황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도별 지주의 분포상황은 지주의 거주지를 나타낼뿐 도별 소작제도의 발전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채지주는 두가지 범주로 나뉘어 있었다. 하나는 도외에 거주하는 부채지주이며 다른 하나는 도내에 거주하는 부채지주이다. 이 구분 역시 대·중소지주의 구분과 같이 지극히 형식적인 구분인 것이다. 대지주인 경우 도내의 거주지주라고 하여 부채지주와 토지의 관리방식이 크게 달랐던 것은 아니다.⁽²⁾ 그러므로 부채지주는 단순히 소유지의 소재지와 거주지주의 도군별 차이를 나타냈을 뿐이다.

부채지주의 상황을 소작지의 비율을 가지고 표시하면 <표 3>과 같다. 군을 단위로 지주의 거주지와 소유지의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는 소작지의 비율을 보면 경기도가 46%로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충남, 황해, 전북, 전남, 충북, 경북, 경남등의 순으로 되어있다. 즉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및 강원도에는 부채지주가 다른 도에 비하여 발달되어 있지 않는

<표 3> 道別 不在地主의 小作地比率 (1930) 單位：割

	京畿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黃海	平南	平北	江原	咸南	咸北	平均
郡內地主의 小作地	5.4	6.5	6.0	6.4	6.5	6.6	6.8	6.3	7.6	8.9	7.1	8.0	7.7	6.9
道內地主의 小作地	4.2	1.1	1.0	2.2	2.2	2.5	2.2	1.7	1.8	0.8	1.5	1.5	1.1	1.8
道外地主의 小作地	0.4	2.4	3.0	1.4	1.3	0.9	1.0	2.0	0.6	0.3	1.4	0.5	1.2	1.3

資料：朝鮮總督府, 『朝鮮の小作慣行』(續編) 1932, p. 2.

(2) 忠南 瑞山郡의 李基升은 시산군내에 논밭 235정보를 가진 대지주였는데, 25개소의 소작집단지에 각각 지주대리인을 두고 1,597인의 소작인을 관리하게 하였다(安齊靛堂, 『忠清南道發展史』 1932, p. 299 및 大橋清三郎, 『朝鮮産業指針』 1915, p. 179).

셈이다. 이것을 다시 도외에 거주하는 지주의 소작지 비율로 보면 충남, 충북 및 황해도에 부채지주가 가장 발달되어 있으며 그 다음이 전북, 강원, 전남, 함북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부채지주는 경기, 황해와 더불어 삼남지방에 가장 발달되어 있었고 대지주도 이 지방에 가장 잘 발달되어 있었다. <표 2>에서 충북, 황해 및 충남에 100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거대지주의 수가 적은 것은 그 지방에 부채지주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남북은 대지주의 수도 많지 않고 부채지주도 발달되어 있지 않으나 100정보 이하의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가 다른 지방에 비하여 많은 편이고, 비록 서대지주는 적다고 하나 지주제도가 덜 발달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이제 하나의 단편적인 자료이기는 하지만 충남의 100정보 이상의 토지를 가진 거대지주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대지주의 존재형태를 보다 깊이 분석하여 보기로 하자.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정보 이상의 토지소유자는 89인이다. 논과 밭의 면적만으로써 100정보 이상의 토지소유자는 77인이다. 그리고 도외거주자 27인을 제외하면 도내거주자는 62인이다. 이 수치를 <표 2>의 수치인 24인과 비교하여 보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표 2>와 <표 4>간에는 약 20년간의 시차가 있으므로 그 사이에 100정보 이상의 대지주가 그만큼 증가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단순히 증가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더구나 <표 2>의 수치는 조선인지주의 일본인지주의 합계인 것이다.

<표 1>에서 우리는 1934년에 100정보 이상의 조선인 거대토지소유자가 792인인 것을 보았다. 이 수치도 <표 2>의 수치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표 2>의 수치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합계이므로 <표 1>의 수치가 <표 2>의 조선인 수치에 비하여 2배 이상이 될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표 1>의 수치와 <표 4>의 수치는 서로 모순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충남의 수치가 전국수치의 11.2%를 차지하는데, 거대지주가 발달한 8개도(경기, 황해 및 삼남6도)에 100정보 이상의 거대지주가 전부 집중되어 있다고 보면 평균 한 도에 전국 거대지주의 12.5%가 있는 셈이므로 전국 거대지주의 11.2%를 충남이 차지한다는 것은 그다지 비현실적인 것 같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표 1>과 <표 4>가 <표 2>보다 정확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표 4>에 의하면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충남의 거대지주는 89인이다. 이 중 200~100정보의 거대지주가 60인으로서 전체의 67.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정보 이상의 거대지주도 29인이나 되며 전체의 32.6%를 차지함으로써 그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표 1>에서는 1,000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조선인 지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 표에는 3인이나 나타나 있다. <표 1>의 토지면적은 논과 밭의 합

개인대 증탁에서는 논밭면적의 합계가 1,000정보 이상인 거대지주가 2인으로 나타나 있다.

거대지주가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의 종류를 보면 논이 63.8%, 밭이 12.6%, 기타가 23.6%로 되어 있다. 이것을 다시 토지소유의 규모별로 보면 100~1000정보 사이는 논이 70%를 약간 상회하고 밭이 11~15%이며 기타는 12~17%사이에 있고 1,000정보 이상은 논이 41.2%, 밭이 7.4%, 기타가 51.3%로 되어 있다. 1,000정보 이상의 거대지주의 소유토지중에서 기타의 비중이 높은 것은 2인의 지주가 면직적으로 기타를 2,911정보나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100정보 이상의 거대지주가 소유하는 토지면적중 논 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조금 상회하게 된다.

〈표 4〉 忠南 朝鮮人大地主의 數 및 土地所有狀況 (100町이상 소유자 : 1930년말 현재)

	지주수	논	밭	기타	합계
町	人	町	町	町	町
1,001이상	3 (3.4)	2,344 (41.2) (781)	423 (7.4) (141)	2,919 (51.3) (973)	5,685 (100.0) (1,895)
1,000~501	3 (3.4)	1,459 (71.8) (486)	230 (11.4) (77)	343 (16.8) (114)	2,032 (100.0) (677)
500~301	6 (6.7)	1,566 (71.3) (261)	336 (15.3) (56)	294 (13.4) (49)	2,196 (100.0) (366)
300~201	17 (19.1)	2,842 (70.1) (166)	496 (12.3) (29)	714 (17.6) (42)	4,052 (100.0) (238)
200~100	60 (67.4)	6,062 (72.2) (101)	1,330 (15.8) (22)	1,011 (12.0) (17)	8,403 (100.0) (140)
합 계	89(100.0)	14,273 (63.8)	2,815 (12.6)	5,281 (23.6)	22,369 (100.0)

資料 : 安齊霞堂, 『忠清南道發展史』 1932.

註 : ()내의 숫자는 % 및 호남평원면적임

이제 거대지주의 논밭면적 소유비율과 전국 소작지의 그것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 소작지중 논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 밭이 차지하는 비율은 55.9%인데 대하여 충남의 거대지주의 경우 논이 86.3%, 밭이 13.7%로 되어 있다. 거대지주는 일반 지주에 비하여 월등히 비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다.

충남 거대지주의 在村・不在지주별 상황은 〈표 5〉와 같다. 거대지주 89인중에서 도내거주자는 62인으로서 전체의 69.7%이며 도외거주자는 27인으로서 전체의 30.3%이다. 도내거주자의 소유토지소재 군내외별 거주상황을 보면 군내거주자가 49.4%, 같은 도내 다른 군에도 토지를 소유한 거대지주가 20.2%이고, 도외거주자는 京城에 거주하는 자가 21인,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가 3인이었다. 부채지주 상황을 정지면적에서 보면 논은 34.2%, 밭은 19.4%, 기타는 8.4%를 각각 도외거주 부채지주가 소유하고 있었다. 즉 전국의 소작지중에서 재촌지주의 소유면적이 부채지주의 소유면적보다 양적으로 크다고 하나 부채지주의 소유지가 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부채지주가 소유하는 소작지의 중

<표 5> 忠南 朝鮮人大地主의 道別居住狀況 <100町 이상 소유자: 1930년말현재>

	지주수		면적		면적		합계		
	人	町	町	町	町	町	町	町	
도내거주자	62 { 郡내 44(49.4) 郡외 18(20.2)	9,385 (65.8)	2,269 (80.6)	4,839 (61.6)	16,493 (73.7)	(151)	(37)	(78)	(266)
도외거주자	27 (京城 24) (기타 3)	4,888 (34.2)	546 (19.4)	442 (8.4)	5,876 (26.3)	(181)	(20)	(16)	(218)
합계	89 (100.0)	14,273 (100.0)	2,815 (100.0)	5,281 (100.0)	22,369 (100.0)				

資料: 安齊設堂, 『忠清南道發展史』 1932.

註: () 내의 수자는 % 및 호년평균면적임

요강이 개촌지주의 그것보다 심고 낮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1930년 전국 소작인의 35%를 부채지주가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증명된다⁽³⁾.

마지막으로 충남의 100정보 이상 토지를 소유한 거대지주의 創業년도를 나타내면 <표 6>과 같다. 이 표가 서대지주의 창업년도를 얼마나 정확히 나타내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소 의문시되는 점이 없지 않다. 原資料에는 거대지주의 개별적 창업年月이 소성기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개촌지주의 생성년도를 이치립 년월까지 명확히 낱힐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법인인 회사의 설립과는 달리 개별적 거대지주의 생성과정은 적어도 수년간에 혹은 수십년간에 걸쳐 생성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년월로 확정한다는 것은 신장나 거리가 먼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료를 전혀 가척 없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원자료에 나타난 대로 꼭히 某年某월에 어떤 지주가 생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 때를 전후로 생성된 것이 아닌가 추측되기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생성년도를 알지 못한 것은 不明으로 나타나 있고 또 명확하지 않은 것은 30년전 혹은 100년전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생성년도가 명확히 기록된 것은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표 6>에 따라 충남의 89명의 거대지주의 창업시기를 구분해 보면 1875년 이전이 3인, 1876~1893년 사이가 12인, 1894~1903년 사이가 16인, 1904~1910년 사이가 14인, 1911~1920년 사이가 17인, 1921~1930년 사이가 6인, 미상이 21인으로 되어있다. 즉 開港 이전에 창업한 거대지주는 3.4%에 불과하며, 개항기에 47.2%의 거대지주가 창업하였으며, 협방 이후에 25.8%의 거대지주가 창업하였고, 창업년도를 알 수 없는 것이 23.7%이다.

우리는 위의 통계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1930년 충남의 거대지주중에서 개항 이전에 생성된 지주는 난 3인 뿐이나, 미상 21인중에는 개항 이전에 창업한 지주가 다수 존재할 것이지만 그것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그 수는 극히 적은 것이다. 우리는 거

(3) 朝鮮總督府, 『朝鮮の小作慣行』(續編) 1932, p. 2.

〈표 6〉 忠南 朝鮮人大地主의 創業年度別 分布狀況 (100町이상 소유자 : 1930년말 현재)

년	도	지	주	수
1875	이전	3	(3.4)	
1876~1893		12	(13.5)	47.2
1894~1903		16	(18.0)	
1904~1910		14	(15.7)	25.8
1911~1920		17	(19.1)	
1920~1930		6	(6.7)	
미	상	21	(23.7)	
합	계	89	(100.0)	

資料 : 安齊霞堂, 『忠清南道發展史』 1932.

대지주라던 대체로 權門勢族이었으리라고 생각하여 왔다. 물론 충남의 거대지주중에도 누구나 다 아는 韓末의 閔氏와 尹氏가 끼어 있으며 밝히지지 않은 貴族, 대관료 및 지방관 출신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지주로서의 立身은 그다지 오래된 것이 아니며 世世代代로 지주행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富者는 3대를 넘기기 어렵다」는 옛 格言이 대체로 타당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셈이다.

둘째 충남의 거대지주는 대체로 개항 이후에 새롭게 형성된 지주들이다. 개항기에 47.2%의 거대지주가 형성되고 일제시대에 25.8%의 거대지주가 형성되었다. 특히 1876~1920년 사이 즉 개항 이후 반세기만에 66.3%의 거대지주가 생성된 것이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주는 어떠한 방법으로 토지를 획득하였을까, 둘째 지주의 身分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점들이다. 필자는 아직도 그것을 명확히 증명할만한 자료도 갖고 있지 못하며, 아직 일일이 조사해 볼 겨를도 없었다. 충남의 거대지주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시대의 대체적인 추세를 기술한 여러가지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시기에 있어서 토지의 집적과정은 賣買가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국가로부터의 토지 下賜, 관권에 의한 적적적인 토지의 勒奪, 일부 親口派에 대한 未墾地拂下등도 없지 않았으나 보편적이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던 이 시기에 있어서 토지매입의 자금원천은 무엇이었던가. 대체로 錢穀・관료의 부정부패, 상업 및 고리대업에 의하여 축적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시기에 있어서 부의 축적방법으로 뚜렷이 발전한 것이 상업 및 고리대 활동이었다. 상업중에는 특히 貿易의 발전이 뚜렷하였다. 그들은 상업활동에서 축적한 부를 토지에 투자했던 것이며 고리대업을 경영상으로써 더욱 많은 토지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⁴⁾

(4) 「貸借에 있어서 元金の 返濟를 내만히 하여 抵當物을 채권자의 소유로 들리는 자가 많다. 이를 듣다 豪商・豪農은 대금에 의하여 토지등 부동산을 산 담액으로 취득하려는 자가 적지 않다」, 日本農商務省編, 『韓國土地農産調査報告』(黃海道篇) 1906, p. 138.

일제시대 지주들은 대체로 양반으로 행세하였다. 아직도 봉건적 유세가 완전히 해체되지 못한 시대사경 속에서 부를 축적한 자는 양반의 격식을 갖출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해야만 지방사회에서 행세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본래의 신분이 모두 양반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일개의 많은 조사기록에서는 지주의 신분을 人官, 지방양반, 家族, 부호, 상인등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이 호칭은 아주 막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시기의 거대지주 속에는 본래 양반이 아니었던 신분의 사람들 특히 상인출신이 많았던 사실을 습힐 수 없는 것이다.⁽⁵⁾

III. 大地主의 土地管理와 畝音

대지주는 대체로 부재지주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재지주는 소작지 소재지의 도 또는 군의 거주지주로 정의되었으나 이것은 통계작성을 위한 편의상의 개념인 뿐이며 본래 의미에 있어서의 부재지주는 자기가 직접 소작지를 관리하지 않고 사음등의 관디인을 두어 소작지를 관리하는 지주라고 하는 것이 옳겠다. 그리고 부재지주를 위와 같이 정의하여야만이 재촌지주와 부재지주의 사회경제적 성격의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의 총님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100정보 이상의 거대지주는 도 또는 군의 거주지주수와 근내거주의 지주수가 비등하였는데 대지주로서의 그들간의 성격에는 기다란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으므로 지주거주지의 도 또는 군의 차이를 가지고 그들을 재촌 또는 부재재주로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대지주는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위하여 투자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관디인을 두어 토지 및 소작인을 관리하였다. 그들은 토지소유자이므로 해서 소기록은 수취하는 단순한 封建的 寄生지주이었으며, 토지의 관리까지도 거의 전적으로 관디인에게 맡기고 있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 소작인의 직접적 지배자는 관디인이었다. 소작인에게 있어서 관디인은 지주보다 부러운 존재였다. 「畝音은 尊貴하기 郡守 또는 觀察使보다 낫다」든지 「畝音을 3년 또는 一代하면 富豪가 될 수 있다」든지 하는 속담은⁽⁶⁾ 관디인이 소작인의 절대적 지배자임을 알려 주는 동시에 지주가 토지 및 소작인의 관리뿐만이 아니라 농업일반에 전혀 무관심하였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대지주가 위와 같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나, 극히 소수이기는 하지

(5) 「...소작자가 가장 많고 거적업·고과·작업인이 다음이며, 지주 역시 적지 않다. 그 중 큰 것은 官吏, 商家者등으로서 대개 都會에 거주한다」. 日本農商務省編, 『韓國土地農產調査 報告』 (慶尙道·全羅道篇) 1906, p. 247.

(6) 朝鮮總督府, 『朝鮮の小作慣行』 (前編) 1932, p. 613.

한 대지주층에는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농업생산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였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그들의 토지 및 소작인 관리방식은 기본적으로 구태의연한 대지주와 다를 바가 없었으며 농업생산력을 높이기 위하여 品種改良을 할다던지 施肥를 장려한다던지 관리인의 자의적 농민수단을 견제한다던지, 소작인을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토지에 묶어둔다던지 하는 활동에 불과하였다. 우리는 이 事例를 「조선총독부」로 부터 소위 농업개발의 선구자라고 하여 褒賞을 받은 지주에서 찾아 보기로 하자.

全州의 白南信은 3탄2권 두락(?)의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였다.⁽⁷⁾ 그는 전주·익산에 1만 7천 두락, 부안·고부에 8천 두락, 장수·임실등 선간지에 2천이두락, 광주·담양·장성·경유·경세·진안·남원에도 각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본래 지주로서 1911—2년 간에 대량의 토지를 매입하여 農場을 건설하고, 전주의 본부를 비롯한 2개의 지부와 1촌장 소에 일본인 3인과 조선인 13인의 사무원을 두었다. 토지관리는 사무원이 각지방의 습속을, 사육이 그지역을 지배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연 2회의 사육회의와 소작인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사육의 지의적 행동을 규제하고, 소작인의 생산활동을 독려했다. 그는 또 농업개발의 발전을 위하여 全益水利組合을 완성하는 한편 소작인에게 품종개량·시비장려등을 독려했다. 그는 품종개량을 독려했던 3년내에 지부관내의 품종개량을 98% 달성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품종개량은 강행적으로 실시되었던 것 같다. 그의 자술서에 의하면 농장개설 이후 관당 생산량은 증가된 것 같으나 농민의 부담은 조금도 경감된 것 같지 않고 심지어 田稅까지 농민이 직접 납부케 하던지 소작료율의 인상에 의하여 농민에게 전가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白南信은 봉건적 수탈은 근대적인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자본주의적 농기업가는 아주 거리가 멀었다.

瑞山의 李基升은 토지 1,296정보(논 137정보, 밭 98정보, 기타 1,061정보)를 가진 대지주이던데 동시에 314反 220步의 토지에 穀物경작, 과수, 축산, 조림, 양잠, 機業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농업자본가이기도 하였다.⁽⁸⁾ 그는 1902년에 지주가 되었으며, 1908년에 농장을 열고, 1911년에 양잠 및 기업을 시작하였다. 그의 농업경영 및 製絲·機業(1915년 기업에 참여된 16인을 고용하고 있었다)은 보잘 것이 없는 것이었지만 당시 조선인의 농기업으로서는 보기 드문 것이었다. 그는 또 대지주이기도 하였다. 서산군내에 23개처, 洪城에 1개처, 開城에 1개처, 도합 25개처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전부 소작지였다. 그는 이 25개처에 地主代理人을 두고 1,597인의 소작인을 지배해 하였으며, 각처에 「共同農

(7) 大橋清三郎編, 『朝鮮産業指針』 1915, 白南信條 참조.

(8) 위의 같은 책, 李基升條 참조.

전국적으로 보던 소작자의 24.1%, 소작인의 38.3%를 관리인이 관리·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면 관리인은 어떠한 존재인가. 관리인의 역사적 기원은 현재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조후기 宮庄主와 부재지주가 발전하면서 京長토에서는 導掌, 부재지주의 토지에는 差人을 두어 토지와 소작인을 관리·지배케 하였으나, 이들이 일제시대의 관리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었던지가 밝혀져 있지 않다. 일제시대의 관리인의 호칭은 두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이조후기 내지 만기에 나타난 호칭이다. 이조후기에 나타난 관리인의 호칭으로서서는 마을 즉 畝首가 가장 보편적인 호칭이었다. 首作人, 農首, 首農人, 食主人, 指(地)審, 差行軍, 農幕主人, 農幕直, 農幕直伊, 看事人, 知事人, 穀主人, 坵幕直, 上庫人, 收稿, 守直, 都作人, 立作人등도 이조후기에 나타난 관리인에 대한 호칭이다. 일제시대에 나타난 관리인에 대한 호칭으로서 가장 보편적인 것은 農監이었다. 이 호칭은 1908년 東拓이 실시되면서 그 농장의 관리인에게 붙인 이름인데 구래의 사음이 세단이 많았기 때문에 그 호칭을 바꾸어 그 세단을 제거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왔다고 한다. 農務員, 區長, 區域長, 有司代理人, 組舍長代理, 理事, 委託人, 指導員, 管理人, 支部長등은 모두 일제시대에 나타난 관리인에 대한 호칭이다.

이제 마을으로 대표되는 이조후기에 나타난 관리인과 농장으로 대표되는 일제시대에 나타난 관리인의 도별분포를 보면 <표 8>과 같다. 1930년 전국의 관리인의 수는 32천여명인데 그중에서 이조후기에 나타난 호칭을 가진 것이 92.5%, 일제시대에 나타난 호칭을 가진 것이 7.5%로서 이조후기에 나타난 호칭을 가진 관리인이 대부분이다. 전체 관리인 중에서 마을이 차지하는 비율이 82.5%이므로 관리인은 대부분이 구래의 호칭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그들의 행동양식은 일제시대에 들어와 이조후기와 많은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고는 하나 본질적으로 다른 바 없었던 것이다. 농장등 근대적 호칭을 가진 관리인의 행동양식도 마을이나 대동소이하었다.⁽⁹⁾ 관리인의 도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 전국의 23.5%로서 가장 많으며 전남이 12.8%, 경북이 12.2%, 전북이 10.5%, 경남이

<표 8> 道別 管理人的 數 (1930년)

	京畿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黃海	平北	平南	江原	咸南	咸北	合計
李朝後期에 나타난 名稱	7,488	2,668	1,799	3,243	3,505	2,928	2,996	2,375	779	667	1,029	321	—	29,798
日帝時代に 나타난 名稱	91	5	—	145	609	996	—	40	—	13	77	142	279	2,397
合計	7,579	2,673	1,799	3,388	4,114	3,924	2,996	2,415	779	680	1,106	463	279	32,195

資料：朝鮮總督府, 『朝鮮の小作慣行』(前編) 1932, pp. 625-6.

(9) 朝鮮總督府, 『朝鮮の小作慣行』(前編) 1932, pp. 613-4.

9.3%, 충북이 8.3%, 황해가 7.5%, 충남이 5.6%이고 나머지는 5%미만이다.

한 사람의 관리인이 관리하는 소각지의 면적을 보면 크기는 5~6백정보로부터 1천여정보에 달하는 것도 있으며 작제는 1~2만에 불과한 것도 있었다. 보통 한 사람의 관리인이 관리하는 토지는 10정보 내지 수십정보였다. 그리고 한 사람의 관리인이 지배하는 소작인의 수도 큰 차이가 있었다. 크기는 수백호로부터 1천여호를 지배하였고 작제는 1~2호를 지배하기도 하였으나 보통은 10호 내지 수십호를 지배하는데 불과하였다.

관리인은 대체로 「신용있는 소작지부근의 有産家」⁽¹⁰⁾에서 선택되었다. 지주의 친척이라던지, 토지구매시의 소개인이란던지거나 지주와의 연고가 있었던 자가 선택되기도 하고, 소작지의 관리를 위하여 나지방에서 이주해 온 관리인도 드물지 않았으나 소작지부근의 신용있는 유산가가 선택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주가 신용있고 재력있는 자를 관리인으로 선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관리인이 재력이 없으면 지주가 안심하고 지기의 재산관리 맡길 수 없었을 것이며, 또 소작인을 유효하게 지배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가난한 농민은 봉건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物神化된 德망이 무엇보다도 필요했을 것이다.

관리인의 직업을 보면 농업자가 94.7%, 비농업자가 5.3%로서 농업자가 거의 전부였다. 농업자중에는 지주가 3.7%, 자작농이 27.9%, 자소작농이 17.5%, 소작농이 47.7%, 관리직업이 6.4%로서 소작농이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비농업자중에는 상업인, 금융업자 및 공무원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관리인의 임무를 보면 아래와 같다.

- 1) 소작료의 수취·보관
- 2) 소작인, 소작지 및 농정의 감시, 지도, 감독, 조시
- 3) 지주소작인간의 제 동지의 전달
- 4) 소작인 및 보증인의 신용조사와 지주에의 의견전달
- 5) 소작권의 이동 및 소작계약의 직접 및 내리체결
- 6) 지주로부터의 납어품의 보관·배급과 金肥의 구입·인신·배급
- 7) 소작인에 전가하는 소각지의 公租·公課의 징수·납입
- 8) 지주가 대부하는 금품 및 내부의 취급
- 9) 지주의 가사 및 재산관리에의 종사
- 10) 지주의 토지구입, 매각 및 매입과 소작료매각의 일선 등이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작인에 대한 관리인의 권한은 아주 광범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10) 위와 같은 책, p 629.

중요한 것이 소작인의 이동이었는데 이것은 진실로 소작인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준 것이니 파장까지있다. 대부분의 대지주는 이 권한을 관리인에게 맡겨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일부 대지주는 관리인의 권리남용을 견제하려는 노력을 하기는 했으나 지주의 관리인에 대한 일상적인 통제가 없고서는 그것도 용이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사실상 관리인은 소작인의 가장 두려운 지배자였던 것이다.

IV. 農業에 있어서 大地主의 役割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지주는 대체로 부채지주였다. 재촌지주라고 하더라도 농업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며 관리인을 두고 봉건적인 방식으로 토지를 관리하고 있었다. 직접 농업생산을 담당하지 않는 당시의 지주로서 그들이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는 수리사업, 토지개량, 시비장터, 품종개량, 농지급의 융통등의 분야였다, 그러나 이 분야에 있어서조차도 대지주의 농업생산에의 기여는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부정적인 것이었다. 대부분의 대지주들은 아예 농업생산에 무관심하였던 것이 사실이며 농업생산에 어느정도 관심을 표시하였던 농장형 지주에 있어서조차도 앞의 白南信 및 李基升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역할은 극히 제한된 수리사업, 품종개량, 시비장터등에 제한되고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事例도 실상은 극소수의 대지주의 경우에만 볼 수 있을 뿐이었다. 대부분의 지주는 단순한 봉건적 소작료의 수취인에 불과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자기의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무슨 방법을 쓰든지 농민을 보다 기혹하게 수탈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제시대의 소작료율이 이조후기보다도 높고⁽¹²⁾ 또 일제시대에 있어서 조차도 후기에 내려갈수록 소작료율이 높아지는 경향에⁽¹³⁾ 의해서도 단적으로 증명되는 바이지만 그들은 또 상업·고리대업을 통해서도 소작인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였던 것이다. 대지주가 어떻게 토지소유와 더불어 상업·고리대업을 행했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는 없지만 우리는 앞서 든 관리인의 임무에 「지주로부터의 굶어픔의 보관·배급과 金肥의 구입·알선·배급」 및 「지주가 대부하는 굶픔 및 이자의 취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도 그 사정을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다.

아래에 제시된 농림업분야의 회사로부터 대지주의 행동양식을 간접적으로 살펴 보기로

(12) 金容燮, 「韓末・日帝下の 地主制」(韓國史研究 8 所收)참조

(13) 李學鍾, 「朝鮮に於ける小作制度」 p. 93 (朝鮮 1922년 9월호 所收)

하지. 물론 이 회사의 경영주들은 대체로 대지주가 아닌 것이다. 그것은 자본의 규모도 보아서도 짐작할 수 있지만, 신남부 총남에 본점은 둔 회사의 경영주는 양지방의 50정보 주

〔註 9〕 朝鮮人農林會社表 <1930년 현재>

會社名	設 立 年 月 日	代 表 人	資本金 (韓元)	主 要 營 業	本 店 所 在 地	備 考
1. 朝鮮農業株式會社	1905.9	宋鍾憲	600,000 (150,000)	農業 및 不動產의 管理, 不動產의 賣買 및 貸付, 農器具 및 肥料의 販賣, 農業資金의 融通等	京 城	營業不振
2. 合資會社 大成社	1919.9	宋賢秀	250,000	未墾地開墾 및 造林, 水利 및 工 請負, 一般物品의 貿易·賣買·委託業	咸南咸興	營業停止
3. 合資會社 新興社	1919.11	金永翊	150,000	未墾地開墾·造林業, 農林海生物 및 기타 貨物의 賣買 및 委託業, 水利事業	全南新興	
4. 南鮮興業株式會社	1920.5	成普永	500,000 (125,000)	土地開墾 및 水利事業의 經營, 農園業의 投資 및 工 資金融通, 物品委託業, 土地管理等	忠南公州	
5. 忠南蠶業株式會社	1921.2	尹相衍	180,000 (45,000)	桑園의 造成, 養蠶·蠶種業	忠南論山	
6. 光州農工株式會社	1921.4	吳九鐸	50,000 (12,500)	土地所有 및 農業의 經營, 農林產物의 加工 및 賣買, 農具 및 肥料의 賣買, 貸金業	全南光州	休業
7. 文川蠶種合名會社	1921.2	鄭鶴和	10,130	蠶種製造販賣	咸南文川	
8. 月隱農産合名會社	1923.10	林桂榮	115,000	農林業, 土地販賣·改良·開墾, 小作人에 대한 資金融通 및 貸付業等	全南靈光	
9. 松禾産業株式會社	1924.6	金重淵	23,000	造林業, 金錢貸付業	黃海松禾	
10. 利川種苗株式會社	1924.7	曹德煥	50,000 (12,500)	種苗用種子의 採取, 苗木栽培販賣	京畿利川	
11. 西鮮産業株式會社	1925.10	朴興植	100,000 (25,000)	農林業, 金融業, 賣買業, 倉庫業	平南龍岡	
12. 中和造林株式會社	1927.7	宋峻燮	50,000 (12,500)	造林業, 農産物輸移出入業, 一般資金融通貸付	平南中和	
13. 全北企業株式會社	1927.11	白寅基	400,000 (100,000)	肥料 및 農具類의 賣買, 不動產賣買, 農資金의 融通	全北益山	
14. 羅州興業株式會社	1928.12	白南善	50,000	肥料 및 農具의 賣買·貸付, 農業資金의 貸付, 農産物賣買	全南羅州	
15. 鄭門農事株式會社	1929.1	鄭禹範	50,000 (50,000)	土地買入 및 改良, 動·不動產의 委託賣買, 金錢貸借	平北鐵山	
16. 合名會社永春農場	1929.7	李晚熙	160,000	農林業, 土地改良, 貸金業	全南康津	
17. 株式會社月山農場	1929.8	韓圭興	80,000 (40,000)	土地建物 및 有價證券의 所有, 農林業의 經營, 農資金融業	全南咸平	
18. 合名會社東化園	1929.9	趙鳳植	25,000	造林·果樹·苗木·人蔘栽培, 消費品購買事業	京畿金化	
19. 永昌興業株式會社	1929.9	鄭完圭	100,000 (25,000)	農事經營, 農産物賣買, 代理業	京 城	
20. 祥星合名會社	1929.10	金益鎮	200,000	土地 및 不動產買入, 土地의 經營, 金錢貸付業	全南木浦	
21. 鮮滿拓殖株式會社	1930.3	鄭秀日	200,000 (50,000)	土地賣買, 鑛山經營, 穀物貿易 및 海産物委託販賣, 貸金業	京 城	
22. 合資會社金宗商會	1930.12	金宗源	50,000	耕地開墾, 市街地經營	平 北 新 義 州	

資料：中村實良編,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1.

은 100정보 이상의 대토지소유자의 명단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지주 일반의 행동양식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1930년말 현재 농림업분야의 조선인 법인기업체는 22개사였다. 이중 養蠶業, 種苗業, 과수재배 및 人蔘재배에 전업하는 4개회사를 제외한 18개 기업체는 지주였던 것 같다. 이들의 영업은 토지소유 및 경영, 토지매매, 토지개간 및 수리사업, 기타 상업활동이 그들의 중요한 영업내용이었겠지만 肥料 및 農具의 매매와 금융업도 중요한 영업내용이었다. 대체로 경영주가 지주였으리라고 생각되는 18개 업체중 금융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14개 업체이며 비료 및 농구의 매매를 경영하는 업체가 4개 업체이다. 그리고 대금융이나 비료 및 농구를 매매하지 않은 업체는 3개 업체뿐이다. 또 18개 업체중 상업을 경영하지 않는 업체는 1개 업체 뿐이었다. 우리는 위의 사실로부터 지주들이 흔히 상업·고리대업을 겸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 지주의 구체적인 행동양식과 지주와 소작인의 직접적인 관계를 보기로 하자. 일제시대 지주들은 소작료를 수취하여 庶食생활을 하는데만 만족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농업에서 나오는 부를 농업에 다시 돌리는 일은 극히 드물었지만 농업에서 나온 부를 가지고 상공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소작료를 수취하는 외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농민을 수탈하여 보다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하였다.⁽¹¹⁾ 〈표 9〉는 지주의 兼業, 관리인의 영업 및 소작인의 借金先을 밝힌 것이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지주의 직업은 금융업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상업이며 자기의 소작인에게 食糧, 금전, 비료 및 농기구의 대부분은 지주의 직업중 배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금융업 및 상업도 도시에서 일반 자금수요자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적으로 영위하는 일은 드물었고 대체로 농민을 대상으로 활동하였던 것이다. 관리인의 직업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농업이 압도적으로 다수였다. 그러나 농업자중에서도 지주·작농이 상당히 많았고 비농업자 중에는 상업·고리대금융자까지 있었다. 그들도 단순히 소작자관리를 통하여 농민을 지배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상업·고리대업을 통해서도 농민을 수탈하고 있었던 것이다.

농민의 차금원은 보편 金貸業者와 지주가 절대다수였다. 金貸業者중에는 지주가 많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결국 이 경우에는 농민은 비록 그를 직접 지배하는 지주는 아닐지라도 지

(11) 「근세 일반정재조직의 변동은 지주로 하여금 점차 그 육망의 발달을 촉진케 하고, 또 그 私經濟의 발달을 저유케 하며, 따라서 현재 지주중에는 단순히 소작료로 의식하는 자가 점차 감소하고, 대개 다른 업무에 겸하게 되어 특히 상공업을 경영하는 지주가 많게 되었다. 따라서 기타의 업무에 겸하는 지주의 농업수익은 농촌으로 환원되는 것이 적은 상태이며…」, 朝鮮總督府, 『朝鮮の小作慣行』(續編) 1932, pp. 122-3.

〈표10〉 地主 및 管理人和 小作人間의 金品去來關係 (1930년)

道 別	地主의 兼業 ①	管理人的 營業	小作人의 借金先 ②
京畿	金融, 商業, 食料 및 肥料貸出	農業, 商業, 金融業, 官吏	金貸業者, 金融組合, 地主, 管理人
忠北	金融, 耕牛貸付, 商業	"	金貸業者
忠南	金融, 農業自給, 商業	"	金貸業者
全北	食糧貸出, 金融, 蠶業	"	金貸業者, 地主
全南	金融 및 食料·肥料의 貸出	"	金融業者, 地主, 金融組合
慶北	金融, 商工業	"	金貸業者, 地主, 市場商人
慶南		"	金貸業者, 地主
黃海	金融, 食糧 및 肥料의 貸出	"	金貸業者, 地主, 管理人, 稅
平南	金融 農業自給, 食糧 및 肥料의 貸付	"	金貸業者, 地主
平北	食糧 및 金貸貸付, 商業, 工業	"	地主, 親戚, 金貸業者, 市場商人
江原	金融, 食糧肥料貸出, 耕牛貸付	"	地主, 貸業者
咸南	農業自給, 商業	"	金貸業者, 金融組合, 穀物商人, 地主
咸北	金融, 農業自給, 商業	"	地主, 自作農, 金貸業者

①은 朝鮮總督府, 『朝鮮의 小作慣行』(續編) 1932, pp. 125-6.

②는 위의 같은 책 pp. 151-2.

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을 당시의 기록에서 探錄해 보면, 「...대부물의 종류는 종자, 비료, 곡류, 금전등 여러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전금로 소작인 구조를 위하여 이금 무리로 대부하는 것도 있으나 이들 대부중 가장 많은 것은 소작인의 救濟를 기화로 영리의 목적을 기치고 금품을 대부하는 경우이다. 즉 길도에 건너 권습와의 종류, 농량대인 長利(전라남북도에서는 色租라고도 칭하고 더욱 사도에 別名이 있다)는 가장 많은 것으로서 그 이자는 1개년내의 대부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5원이지만 부겨 추수기에 현물로 회수하는 것을 보상으로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일제의 시책은 단순히 長利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으나 금전고리대도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은 기자의 사실이다.

위의 사실에서 우리는 地主·商人·高利貸가 사실상 일체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V. 맺 음 말

위에서 우리는 내지주의 존재양식, 일제하 내지주의 성립시기, 그들의 토지관리방식과 농업에 있어서의 역할은 개략적으로 살펴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필지가 획득한 자로써 아주 잘 충분하고 분식시각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글은 하나의 완결된 논문이 될 수 없었고 따라서 하나의 뚜렷한 결론도 제시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같은 미완성작품인 것이다.

앞의 분석에서 현상적으로 들어나는 몇가지 문제점들을 간추려봄으로써 결론에 대신할까 한다.

1) 현재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지주에 관한 통계는 어느 것이나 극히 불완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주의 실상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통계조사의 기준, 목적 및 그 精粗를 엄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느 통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나 위와 같은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지주통계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한 것 같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주에 관한 통계가 다른 목적을 가진 조사의 부산물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 대지주의 경우 부채지주와 재촌지주로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인 구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부채지주나 재촌지주나 대지주인 경우 관리인을 두고 간접적으로 토지를 관리하였으며 그들의 행동양식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3) 일제시대의 대지주는 대부분 개항후에 創業하였다. 제시한 자료가 아주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만약 그것이 대체적인 경향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개항기에 있어서도 지주의 지대수입, 귀족 및 관료의 不正수입등이 토지획득의 자금원이 되었으며, 관료의 강권적 약탈이 그들로 하여금 지주어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마는 당시 무역이 급속히 발전했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상업 및 고리대에서 축적한 자본이 토지에도 투자되는 경향이 일반적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일제시대 지주의 신분이 원래의 양반이었을까하는 의문도 생긴다.

4)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대지주의 일부는 농장의 형태로 토지를 관리하면서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토지로부터 한 톨의 수입이라도 더 늘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토지이용은 구태의연한 지주와 본질적으로 다른 방식이 아닌 소작료 수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주는 비록 근대적 관리기술을 이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을 농업자본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5) 일제시대에 있어서의 지주는 상업자본 및 고리대의 성격을 한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은 앞의 분석에서 어느 정도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앞의 분석이 미흡한 자료에 입각한 것이므로 그 신빙성도 다소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가해 볼까 한다.

(이 논문은 문교부의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신청 논제는 「1920年代 朝鮮의 地主制研究」였으나, 논문의 내용상 위와 같이 논의를 변경하였다.)